

---

---

# 제94회 군산금강중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료

---

---

2023. 4.

군 산 금 강 중 학 교

# 목 차

안전번호	안 건 명	제안자	제 안 일 년 월 일	접수자	비고
1	제9기 군산금강중학교운영위원회 2023학년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안)	정민주	2023-03-30	최정현	
2	2023학년도 뉴질랜드 국제교류 프로그램 실시 변경(안)	황단비	2023-03-28	최정현	
3	2023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안)	이숙희	2023-03-27	최정현	
4	2023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활동 운영 계획(안)	임혜원	2023-03-28	최정현	
5	2023학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안)	김해인	2023-03-28	최정현	
6	2023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강해인	2023-03-28	최정현	
7	2023학년도 학칙(교외체험학습 관련) 개정(안)	김화중	2023-03-27	최정현	
8	2023학년도 학칙(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정(안)	정미	2023-03-28	최정현	
9	2023학년도 학생회 규정 개정(안)	이수아	2023-03-27	최정현	
10	2023학년도 군산금강중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안유리	2023-03-28	최정현	
11	2022학년도 군산금강중학교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박병규	2023-03-30	최정현	
12	2022학년도 군산금강중학교 발전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최정현	2023-03-30	최정현	
13	군산금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정민주	2023-03-30	최정현	

# 제9기 군산금강중학교운영위원회 2023학년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안)

안 건 번호	1
-----------	---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30일  
제안자 : 교 장 김은하  
담당자 : 행정실장 정민주

## 1. 제안 이유

「군산금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제9기 2023학년도 군산금강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2. 제안 내용

가. 선출인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선출

나. 선출대상: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다. 선출방법: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3. 기타 사항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음.

# 2023학년도 뉴질랜드 국제교류 프로그램 실시 변경(안)

안 건 번호	2
-----------	---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8일  
제안자 : 교장 김은하  
담당자 : 교사 황단비

## 1. 제안 이유

국제교류를 통하여 국제적 안목을 넓혀 양교의 화합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사회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해 뉴질랜드 Greenbay School 학교와의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2. 관련 근거

가. 국제교류 수업학교 선정(교육혁신과-4005, 2023.2.24.)

## 3. 주요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방문학교	뉴질랜드 Greenbay School (변동 없음)	
2.참가대상	1학년 희망 학생 전체	1학년 재학생 중 16명 최종선발
3.방문기간	여름방학 중 예정	2023.7.17.(월)~8.6.(일) (20박 21일)
4.예산경비	약 5,000,000원 전액 수익자 부담	1인당 최대 5,000,000원 전라북도교육청 지원 (연수비용이 5,000,000원을 초과할 경우 수익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4. 기대효과

가. 영어권 국가에서의 생활문화체험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및 글로벌 리더십 함양  
나. 영어 사용 능력 향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 수업 환경 기반 조성

# 2023학년도 1학년 현장체험학습 운영 계획(안)

안 건 번호	3
-----------	---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7일  
제 안 자 : 교장 김 은 하  
담 당 자 : 교사 이 속 희

## 1. 제안 이유

정규 학교교육과정의 일부로 자녀들의 전인교육 일환인 공동체 생활의 즐거움을 체험하고, 올바른 도전정신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2. 관련 근거

2023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 3. 주요 내용

- 날 짜: 2023년 5월 26일(금)
- 대 상: 1학년 전체
- 장 소: 나운동 롯데시네마 및 각 반 학급활동 장소
- 지출 경비 계획
  - 청소년 단체입장권 - 학급운영비 예산 사용
  - 중식 - 도시락 및 개별적으로 자체 해결
- 안전계획
  -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학교에서 관리
  - 학교·교사·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응급상황 발생 및 필요 시 즉시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락한다.
  - 식중독 및 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한다.
  - 요양호 학생을 파악하여 수시 관찰하고 비상약품을 준비한다.  
(개인용 비상약품은 개인이 준비함)

# 2023학년도 2학년 현장체험활동 운영 계획(안)

안 건 번호	4
-----------	---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8일  
제안자 : 교장 김은하  
담당자 : 교사 임혜원

## 1. 제안 이유

2023학년도 2학년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학생안전 대책, 안전교육 실시 등을 포함한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장소, 인솔자 현황, 경비, 안전계획, 정산 계획 등의 내용을 학교 운영위원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공개적 의사결정, 공정한 심의 및 자문, 사후 교육적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2. 관련 근거

-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22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이후, 변경 없음.)

## 3. 주요 내용

- 일 자: 2023.05.26.(금)
- 장 소: 전라남도 곡성 기차마을
- 인솔자 현황: 임혜원 외 7명(임혜원, 장민호, 구범진, 송수용, 송수연, 구범진, 조은별, 이수아)  
(※상황에 따라 인솔자는 추가될 수 있음.)
- 참여인원: 학생 190명, 교사8명  
(※현장체험활동 참가 희망 조사 후, 실제 참여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안전 계획: 2023.05.22. (월) 1교시 담임교사의 사전 안전교육 실시 예정.
- 예상 경비: 금7,275,000원 (특별교부예산이 일부 확보되는 경우, 4,925,000원)
- 기타 사항
  - 2학년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 2학년 현장체험학습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
  - 사전답사 계획: 일시 - 2023년 5월 3일 (수) 13:00 ~ 18:00  
(※사전답사 계획의 일시는 변동될 수 있음.)
  - 안전계획

# 2023학년도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안)

안 건 번호	5
-----------	---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8일  
제 안 자 : 교장 김 은 하  
담 당 자 : 교사 김 해 인

## 1. 제안 이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수업과 평가를 진행하고 내실 있는 자유학기제 활동을 운영하고자 함.

## 2. 관련 근거

- 2023 전라북도 자유학기제 운영 계획

## 3. 주요 내용

- 2023학년도 입학생 3개년 교육과정 편성표
- 자유학기제 추진협의회
- 자유학기제 월별 추진 계획
- 자유학기제 시간표 운영 모형
- 자유학기 활동 운영 계획
  - 진로탐색활동 / 주제선택활동 / 예술체육활동 / 동아리활동
- 교사 기간 활동 계획
- 2023학년도 군산금강중학교 자유학기 예산 사용 계획
- 자유학기 활동 외부 체험 안전대책

# 2023학년도 1학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안)

안 건 번호	6
-----------	---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8일  
제안자 : 교장 김은하  
담당자 : 교사 강해인

## 1. 제안 이유

-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학부모가 안심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 계층 간,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여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교육복지 구현
- 꿈과 끼가 넘치는 행복한 학교 문화 속에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건강한 학생상 정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과 오미크론의 지역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학생에 대한 안전한 방과후 학교 제공

## 2. 관련 근거

- 2023 전북방과후학교 운영계획 · 길라잡이
- 2023학년도 1학기 군산금강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계획(군산금강중학교-2201)

## 3. 주요 내용

- 운영 기간
  - 1학기 방과후 학교: 2023년 4월~7월 중 수요일 (10회×2시간=총 20시간 예정)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2019.3.26.)에 따라 단위학교는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미기재 (단, 자율동아리와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경우는 동아리 활동에 기재 가능함.)
- 학기 단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출결우수상(가산점 미부여 교내상) 시상
- 코로나19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신설 · 운영
- 프로그램 수강료: 수익자 부담 원칙이나, 2023 도시지역 방과후학교 지원금 및 자유수강권 예산으로 수강료 전액 지원 예정

# 2023학년도 학칙(교외체험학습 관련) 개정(안)

안 건 번호	7
-----------	---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7일

제안자 : 교장 김은하

담당자 : 교사 김화중

## 1. 제안 근거

- 민주시민교육과-2478(2023.2.11.) 체험학습 기본 방침에 따른 학칙 제정 및 개정

## 2. 변경 내용

기존안(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학칙)	개정 및 제정안(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학칙)
<p>· 제11장 교외체험학습 운영 제38조(운영) 제3항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 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로 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고사기간에는 교외체험을 사용할 수 없다.)</p>	<p>□ 개정안</p> <p>· 제11장 교외체험학습 운영 제38조(운영) 제 3항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보’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에 포함)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은 불가하지만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15일로 유지하고 고사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없다.</p>
<p>없음</p>	<p>□ 제정안(신설)</p> <p>· 제11장 교외체험학습 운영 제38조(운영) 제7항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가능하다.(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단, 가정학습은 반일 운용이 불가하다.</p>

# 2023학년도 학칙(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정(안)

안건 번호	8
----------	---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8일

제안자 : 교장 김은하

담당자 : 교사 정미

## 1. 제안 이유

- 전북교육인권센터-79(2023. 3. 17.), 전북교육인권센터-84(2023. 3. 8.)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 2. 변경 내용

기존안(2022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개정안(2023학년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
<b>제5조(회의의 소집)</b>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b>제5조(회의의 소집)</b>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b>21일 이내</b> 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b>제6조(당사자의 출석)</b>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b>제6조(당사자의 출석)</b>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b>10일 전</b> 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b>제10조(분쟁조정 개시)</b>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b>제10조(분쟁조정 개시)</b> ①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b>21일 이내</b> 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 3. 변경 사유

- 2022년 교육부 교육활동 매뉴얼에 따라 학교 교권보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표준안이 수정되었기에 이에 근거하여 군산금강중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2023학년도 학생회 규정 개정(안)

안 건 번호	9
-----------	---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7일

제 안 자 : 교장 김 은 하

담 당 자 : 교사 이 수 아

## 1. 제안 이유

2023학년도 학생자치회 부서 편성과 실정에 맞는 학생회 규정 변경을 통한 교내 학생자치 활성화

## 2. 변경 내용

다음 내용으로 학칙 '제3장 제11조 ③, ④' 를 변경

### 제3장 기구 및 조직

#### 제11조(학생자치회)

③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기획부 : 축제 등 학생자치활동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행사 기획 및 진행
2. 총무부 : 학생자치활동 예산안 편성 및 집행, 학생자치회 일정 관리
3. 복지부 : 교내 청결 유지 활동과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추진
4. 홍보부 : 학교 및 학생자치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집행
5. 체육부 : 스포츠 지원단과 함께 학교 체육 관련 행사 기획 및 진행

④ 각 부서의 부장·차장 선발은 학생회장단의 토의와 합의 하에 그 방법과 과정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선출할 수 있으며 학생자치회 구성원은 대의원회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다.

# 2023학년도 군산금강중학교생활규정 개정(안)

안건 번호	10
----------	----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8일  
제안자 : 교장 김은하  
담당자 : 교사 안유리

## 1.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 군산금강중학교생활규정 제5장 규정의 개정

## 2. 개정 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2장	제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4조[학습에 관한 권리] '④ 학생은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최대한 노력한다.' 추가
제3장	제35조 [교사의 권한] 2. 교육환경 조성	제35조[교사의 권한] 2. 교육환경 조성 '(수업침해행위에 적극 대응)' 추가
	(신설)	'제32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본교 학생은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3.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휴대하거나 복용하지 않는다. 7.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8. 부적절한 언행(협박, 폭행, 절취, 절도, 공공물 파손, 고성방가, 풍기문란 행위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추가
	(신설)	'제33조【동아리 활동】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들 수 있다. ③ 동아리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④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추가
4장		'(별첨)' 추가 및 금강중학교생활규정 내 별도 첨부

# 2022학년도 군산금강중학교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안 건 번호	11
-----------	----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8일  
제안자 : 교장 김은하  
담당자 : 주무관 박병규

## 1. 제안 이유

2022학년도 군산금강중학교회계 운영에 따른 결산 심의

## 2. 학교회계 결산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 전라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21조(예산회계의 결산)

## 3. 주요 내용

-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세입 ①	세출 ②	차액 ③=①-②	비고
결산액	1,998,749,910	1,993,996,800	4,753,110	

- 결산잔액(잉여금) 처리상황

(단위 : 원)

세계잉여금 (A)	이월액				순세계 잉여금 (C=A-B)
	소계 (B)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4,753,110	0	0	0	0	4,753,110

- 순세계 잉여금은 2023학년도 학교회계로 이월

# 2022학년도 군산금강중학교 발전기금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안 건 번호	12
-----------	----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28일  
제안자 : 학교운영위원장  
담당자 : 주무관 최정현

## 1. 제안 이유

- 2022학년도 군산금강중학교발전기금 결산 심의

## 2. 학교발전기금 결산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교육부)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 관리요령(전라북도교육청)

## 3. 주요 내용

세입·세출결산 총괄표

세입(A)	세출(B)	차액(A-B)	비고
6,420원	6,420원	0원	세입: 2021학년도 이월금 세출: 학교회계 편입

세입결산내역

사업명	이월금 및 이자수입	발전기금 접수액	합계액
2021학년도 이월금	6,420원	0원	6,420원

세출결산내역

사업명	세출내역	합계액
2021학년도 이월금 학교회계 편입	6,420원	6,420원

※ 관련 규정: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에 따라 소액(1만원 이하)의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로 편입

# 군산금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안 건 번호	13
-----------	----

발의년월일 : 2023년 03월 30일  
제안자 : 교장 김은하  
담당자 : 행정실장 정민주

## 1. 관련근거

-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 2023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전라북도교육청)

## 2. 개정의 필요성

- 업무편람 표준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내용 명확화 및 개정사항 반영
- 업무편람 표준안 미제시 내용 및 불필요한 조항 삭제

## 3. 주요내용

- 규정 내용 및 용어의 명확화 (제2조 ~ 제33조)
- 불필요한 조항 삭제
  - 제5조 제4항, 제6항 / 제6조 제2항 / 제7조 제2항 / 제18조 제3항 / 제19조 제1항, 제2항
- 개정사항 반영으로 조항 신설
  - 제5조 제7항 / 제10조 제6항 2호 / 제10조 제7항 3호 / 제11조 제6항 / 제12조 제1항 하단 및 제2항
- 전문개정
  - 제25조 제2항